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67
----------	-------

제출년월일 : 2020. 0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에 따라 환경부 기준의 구체적 분리배출을 적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함.

## 3.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조정(안 제2조3항)
  -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지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되어 온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업종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제작물품 구체화(안 제8조제2항)
- 다.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반영(안 제10조제1항)
- 라. 문전수거제 정착화를 위한 문전수거통 사용 명시(안 제10조제2항)
- 마. 용어의 미비점 보완 등(안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0. 4. 23. ~ 5. 13.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5.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으로, “다류”를 “다류(茶類)”로, “영업으로서 신고한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홍보물”을 “장바구니, 다회용컵, 냄비받침, 달력,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을 이용한 홍보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해당”을 “해당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아 배출하거나”를 “담아”로, “배출하여야”를 “배출하거나 RFID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하여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 및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수거용기를”을 “전용수거용기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거용기가”를 “수거용기 등이”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자로 하여금”을 “자에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처리하고자 하는”을 “처리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을 “재활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조하고자 하는”을 “건조하려는”으로 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춧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 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u>다류</u>,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u>영업으로서 신고한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u>은 제외한다.</p> <p>4. ~ 7. (생 략)</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u>홍보물을 제작</u></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 ----- ----- 「<u>식품위생법 시행령</u>」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 ----- <u>다류(茶類)</u>----- ----- <u>사업장</u>----- -----.</p> <p>4.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장바구니, 다회용컵, 냅</u></p>

·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를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

비받침, 달력, 컴퓨터용마우스 패드 등을 이용한 홍보물----

③ -----  
----- 포함한다-----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 해  
당한다-----  
--.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  
-----  
-----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

② -----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

-----  
-----  
-----  
----- 담아-----  
-----  
----- 배출하거나 RFID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하여야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설치) ① -----  
-----  
전용수거용기 및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 으로 한다)-----  
-----  
-----  
-----.  
② -----  
-----  
-----  
----- 전용수거용기 등을 -----  
-----  
-----.



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료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③ -----  
-----  
----- 수거용기  
등이 -----  
-----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자에게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처리하려는 -----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  
-----  
-----.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  
-----  
--- 전용수거용기 등-----  
-----.

② -----  
-----  
-----  
-----.

1. 재활용하려는 -----  
-----  
-----  
-----  
-----.

2. -----  
건조하려는 -----  
-----  
-----  
-----.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3. (생략)

[별표 2]

####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 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비닐병뚜껑, 폐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  
-----  
-----.

### 3. (현행과 같음)

[별표 2]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춧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 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제작물품 구체화(안 제8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정아영 (☎ 3153-9225)